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144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4. 10. 15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1. 최복순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211) 지분에 관하여 2023. 6. 2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1,428,571원2)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,428,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판단

가. 피고 B, D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나. 피고 C: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방해미

별지

1) = $1/3$ 지분 $\times$ $1/7$ 지분

2) = 4,285,714원 $\times$ $1/3$ 지분